

해양오염에 관한 고찰 (III)

한국어선협회 기술개발부

주임기술원 이영석

1. 해양오염방지법

다. 해양오염방지법 중 어선에 관련된 벌칙

지난호에는 어선에 관련된 해양오염방지법의 규정을 살펴보았다. 앞의 규정을 위반할 때 벌칙은 어떠한 것이 있으며, 경중은 어느 정도인지 살펴보아 법을 준수하는 데 소홀함이 없어야겠으며 이로 인한 처벌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겠다.

벌칙은 해양오염방지법 제8장 법 제49조부터 제55조까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 법 제49조 1항

— 법 제5조 제1항을 위반하여 기름을 배출한 자, 즉 선박으로부터의 기름의 배출 금지로 총톤수 100톤 이상의 어선에 해당된다.

— 법 제10조 제1항을 위반하여 폐기물을 배출한 자, 즉 선박으로부터의 폐기물의 배출

금지로 어선이나 일반선박 모두 적용되는 것으로 “해양오염방지법 시행규칙” 제2장제4조제2항에 의하면 “통상 탑승인원 20인 이하의 선박에 있어서는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어선에 적용되는 규정이 톤수 기준인데 반하여 이 규정은 승선원(선장, 기관장 및 어로작업원 등 모두를 포함)을 기준하고 있으므로 유의해야 하며, 연근해 어선으로는 채낚기어선이 가장 많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 법 제14조의 5, 제1항 내지 제3항을 위반하여 선박을 항행에 사용한 자, 즉 해양오염방지장치의 검사대상선박이 해양오염방지증서, 임시해양오염방지증서 또는 국제해양오염방지증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항행을 한 선박에 해당하는 규정으로 해당되는 어선은 여러 불가피한 경우에 대응할 수 있는 법적 배려가 되어 있으므로 반드시 합법적인 조치를 취하여 불이익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

— 법 제15조제1항을 위반한 자 : 어선에는 해당되지 않음.

— 법 제17조제1항을 위반한 자 : 어선에는 해당되지 않음.

— 법 제22조제2항을 위반한 자 : 어선에는 해당되지 않음.

— 법 제27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즉 대량의 기름이 배출되는 경우의 방제조치에 관한 것으로, 대량의 기름이 배출되는 경우에 신고를 해야하는 자는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배출된 기름의 확산과 제거 및 계속되는 배출의 방지를 위한 응급조치를 하여야 하며, 배출된 기름이 적재되어 있던 선박의 소유자 및 업무와 관련하여 배출원인이 되는 행위를 한 자로 되어 있다. 이 내용 중에는 어선으로서 기름배출 사고를 목격하게 된 경우는 내무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응급조치를 해야 한다. 물론 사고어

선의 선주나 사고 유발의 승선
원도 물론 해당된다.

2)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 만원 이하의 벌금

— 법 제 5조제 1항인 선
박으로부터의 기름의 배출금지
를 과실로 인하여 위반하게 된
자

— 법 제 10조제 1항인 선
박으로부터의 폐기물의 배출금
지를 과실로 인하여 위반하게
된 자

— 법 제 15조제 1항을 위
반한 자 : 어선에는 해당되지
않음.

3)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 만원 이하의 벌금

— 법 제 43조 규정에 의
한 명령이나 조치를 거부, 방해
또는 기회한 자, 즉 “선박이
해양오염방지법의 규정을 위반
한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
에는 관계당국은 정선, 검색,
나포 등 기타 필요한 명령이나
조치를 할 수 있다”를 위반한
것을 말한다.

4)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 만원 이하의 벌금

— 법 제 6조제 1항의 규
정을 위반한 자, 즉 선박의 소
유자가 공동부령이 정하는 기
준에 의하여 선박에 기름의 배
출방지를 위한 선저폐수 배출
방지장치, 물 벨러스트 배출방
지장치, 분리 벨러스트 탱크,
화물창 원유세정설비 등, 해양
오염방지장치를 설치하지 아니
한 경우에 적용된다.

— 법 제 11조제 1항의 규
정을 위반한 자 : 어선에 해당

되지 않음.

— 법 제 14조의 7의 규정
을 위반한 자, 즉 법 제 6조의
해양오염방지장치의 설치 등에
관한 규정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선박에 대
하여 해양오염방지장치의 교체,
개조 또는 수리 등 기타 필요
한 조치를 취한 수산청장 또는
항만청장의 명을 지키지 아니
한 경우다.

— 법 제 16조의 규정을 위
반한 자 : 어선에 해당되지 않
음.

— 법 제 25조제 1항의 규
정을 위반한 자 : 어선에 해당
되지 않음.

— 법 제 36조의 규정을 위
반한 자 : 어선에 해당되지는 아
니하나, 수산업에 종사하는 자
로서 “조정위원회”的 조정위원
이 되었을 경우는, 분쟁조정 중
에 알게된 기밀을 누설하여서
는 아니된다.

— 법 제 46조의 2 제 1항
및 제 2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 어선에 판계되지 아니하나
설치코져 하는 해양오염방지장
치, 자재 또는 약제가 합법적
인 승인을 득한 것인지를 확인
하여 선박에 적재함으로써 비
승인품으로 시정명령이나 조치
에 따른 불이익이 없도록 유의
해야 할 것이다.

5) 200 만원 이하의 벌금

— 법 제 6조제 3항의 규
정을 위반한 자, 즉 해양오염
방지장치를 공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유지하고 작동하지
아니할 경우 적용된다.

— 법 제 6조의 2의 규정
을 위반한 자, 공동부령이 정
하는 선박의 선수 탱크와 총들
격벽보다 앞쪽에 있는 탱크에
는 기름을 적재해서는 아니된
다는 것으로 선주는 선박의 초
기설계사로부터 당해 선박이 이
법에 저촉이 되는지를 검토해
야 할 것이다.

— 법 제 6조의 3의 규정
을 위반한 자, 선박 내 오염물
질의 처리에 관한 것으로 선박
내 저장이나 처리방법을 위반
한 경우에 적용된다.

— 법 제 14조의 2의 규
정을 위반한 자, 즉 해양오염
방지장치의 검사에 관한 사항
으로 정기검사, 중간검사, 임시
검사 및 임시항행검사를 받아
야 한다. 초기 선박전조사 형
식승인을 득한 검사품을 탑재
하였더라도 이 검사들을 받아
야 계속 항해가 가능하므로 항
시 유의하여 시간적 제한이 강
한 어기를 놓치는 경우가 없도
록 선주는 숙지하고 있거나 검
사기판과 상의하여야 할 것이
다.

— 법 제 20조제 1항 및 제
2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 어선
에 해당되지 않음.

— 법 제 22조제 1항의 규
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자 :
어선에 해당되지 않음.

— 법 제 26조제 1항 1, 2
호 해당자로서 신고를 하지 않
거나 허위신고를 한 자, 즉 배
출된 기름이 적재되어 있던 선
박의 선장이나 시설의 관리자
및 선박 또는 시설의 종사자가

아닌 자로서 기름의 배출원인
이 되는 행위를 한 자는 신속
하게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다.

— 법 제 27조제 4항 및 법
제 28조제 1항의 규정을 위반
한 자, 즉 기름을 방제하는 데
필히 형식승인 및 검정 또는 인
정을 받은 것을 사용하거나 비
치해야 한다.

6) 50만원 이하의 벌금

— 법 제 26조제 1항 3호에
규정하는 사항을 위반한 자, 즉
기름이 해면에 퍼져 있는 것을
발견한 자로서, 이는 상당히
적용상 애매하나 해양오염방지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국
민적 협조가 요구되는 만큼 위
법의 차원을 떠나 이러한 상황

을 발견하는 즉시 신고하여 피
해를 줄이는 데 기여하여야 할
것이다.

— 법 제 38조제 2항의 규
정을 위반한 자: 어선과 관련
사항이 없으나 어선의 해체를
할 경우도 적용되므로 선박의
해체를 업으로 하는 자는 지켜
야 할 사항이다.

표 1. 위반행위의 종류별 과태료

위반행위	해당법조문	과태료금액
1. 법 제 8조제 1항의 규정에 의한 기름기록부를 비치・기록하지 아니한 자	법 제 53조의 2 제 1항제 1호	60만원
2. 법 제 8조제 1항의 규정에 의한 기름기록부의 기재사항을 허위로 기재한 자	" " "	50 "
3. 법 제 8조제 1항의 규정에 의한 기름기록부를 보존하지 아니한 자	" " "	40 "
4. 법 제 14조제 1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 처리 기록부를 비치・기록하지 아니한 자	" " 제 2호	60 "
5. 법 제 14조제 2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기록 부의 기재사항을 허위로 기재한 자	" " "	50 "
6. 법 제 14조제 2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기록 부를 보존하지 아니한 자	" " "	40 "
7. 법 제 7조제 1항의 규정에 의한 오염방지관리 인을 임명하지 아니한 자	" 제 2항제 1호	30 "
8. 법 제 7조제 2항의 규정에 의한 증빙서류를 비 치하지 아니한 자	" " "	20 "
9. 법 제 12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 한 자	" " 제 2호	30 "
10. 법 제 14조의 5 제 5항의 규정에 의한 해양오 염방지증서 등을 비치하지 아니한 자	" " 제 3호	" "
11. 법 제 16조의 2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오염방 지관리인을 임명하지 아니한 자	" " 제 4호	" "
12. 법 제 16조의 2 제 2항의 규정에 의한 증빙서 류를 비치하지 아니한 자	" " "	20 "
13. 법 제 19조 또는 법 제 23조의 규정에 의한 신 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신고를 한 자	" " 제 5호	30 "
14. 법 제 20조제 3항의 규정에 의한 폐유처리대 장을 비치, 기록, 보존하지 아니한 자	" " 제 6호	" "
15. 법 제 20조제 3항의 규정에 의한 폐유처리대 장을 허위로 기재한 자	" " "	20 "
16. 법 제 46조의 4의 규정에 의한 관계요원에 대 한 교육훈련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	" " 제 7조	" "

— 법 제40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즉 정당한 이유 없이 해양오염방지 및 해양환경보전을 위하여 관계공무원의 출입검사, 보고지시 등을 거부해서는 아니된다.

— 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제출을 거부 또는 기피한 자, 즉 이는 법 제40조에 의한 기름 기록부사본의 제출을 요구받았을 때, 이에 선장 또는 선박소유자는 응하여야 한다.

7) 과태료

—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법 제8조의 기름기록부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자 및 법 제14조의 폐기물의 처리기록부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자로 과태료 금액은 아래 표와 같다.

—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 법 제7조제1항 및 제2항, 법 제12조, 법 제14조의 5제5항, 법 제16조의 2제1항 및 제2항, 법 제19조 또는 법 제23조, 법 제20조 제3항 및 법 제46조의 4 규정을 위반한 자에 저촉되는 것으로 앞의 표 1과 같다. 표 1의 내용은 법 제53조의 3제1항에 의하여 해양오염방지법 시행령 제46조의 2제3항에 관련된 내용이다.

라. 어선에 관련된 기타 사항

1) 부 칙

— 시행일 : 법은 1977년 12월 31일에 처음 제정, 공포되어 1980년 12월 31일에 1차 개정 및 1986년 12월 31

일에 2차 개정되어 1987년 7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시행령은 1978년 9월 25일에 제정되어 1982년 9월 15일 1차개정, 1987년 7월 1일 2차 개정을 하여 공포와 동시에 발효되었다. 시행규칙은 보건사회부령으로 1987년 8월 31일에 처음 공포, 1988년 5월 25일 개정되어 시행에 들어갔다. 그러나 아직까지 공동부령(농수산부장관과 교통부장관의 공동부령)은 공포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공동부령이 적용되는 조항들에 약간의 문제가 있다. 그러나 선주는 법의 근본취지와 추이를 감안하여 해양오염방지법에 합당하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이다.

— 해양오염방지장치의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 이 법 시행 당시 선박으로서 해양오염방지장치(종전의 선저폐수배출방지장치를 제외한다)를 설치해야 할 선박의 소유자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1년내에 당해 해양오염방지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 국제기름오염방지증서의 효력에 관한 경과조치 : 이 법 시행 당시 국제협약에 따라 교부한 국제기름오염방지증서는 수산청장 또는 해운항만청장이 교부한 국제해양오염방지증서로 본다.

— 피해배상에 관한 경과조치 : 선박 또는 해양시설로부터 배출된 기름 또는 폐기물에 의한 해양의 오염으로 인한

피해의 배상에 관하여는 새로이 법률이 제정, 시행될 때까지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 해양오염방지를 위한 기자재의 형식승인 및 검정의 효력에 관한 경과조치 :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해양오염방지를 위한 기자재의 형식승인 및 검정은 수산청장 또는 해운항만청장이 당해 해양오염방지장치, 자재 또는 약제에 대하여 행한 형식승인 및 검정으로 본다.

2) 폐기물

폐기물은 법 제2조제2호에서 정하고 있는 “사람이 필요로 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 등으로서 원활한 해양이용을 저해하는 물질(기름을 제외한다)로서 보건사회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로서 보건사회부령으로 정하는 것은 다음과 같다.

— 특정폐기물 : 카드뮴 및 그 화합물, 수은 및 그 화합물, 유기 할로제화화합물, 시안화화합물, 유기인화화합물, 납 및 그 화합물, 6가크롬 및 그 화합물, 비소 및 그 화합물, 동 및 그 화합물, 아연 및 그 화합물, 유기 실리콘화화합물, 불화물, 기타 환경청장이 정하는 유해물질 등의 특정유해폐기물, 합성고무, 합성섬유, 합성피혁을 포함한 폐합성수지 및 폐합성고분자화합물, 특정유해폐기물을 함유하지 아니한 폐산 및 폐알카리를 말한다.

— 일반폐기물 : 폐지류, 폐목재류, 폐천연섬유 및 폐천연

고무류, 폐천연가죽류, 동물 및 식물성 고형물, 분뇨, 특정폐기물을 함유하지 아니한 오니류 및 액상폐기물, 수송, 어로, 기타 선박의 통상활동에서 생기는 오수 등의 유기물류 폐기물과 금속면류, 유리편류, 도자기편류, 건축폐재류 등 비금속물질, 특정폐기물을 함유하지

아니한 광재, 연소재, 분진류, 수저토사류 및 폐각류 등의 무기물류 폐기물을 말한다.

3) 해양시설

법 제 2조 7호의 해양시설은, 기름, 폐기물, 기타 물건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아 처리 또는 저장 등의 목적으로 설치한 구조물(해역과 일시적으로 연결

되는 구조물 및 해역에 고정 설치된 부선을 포함한다), 사람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구조물 및 해저광구에 설치된 구조물 등이다.

여기서 유의할 것은 각 업종 별 수협이 보유하고 있거나 건조하는 유류보급부선이 적용대상이므로 적합한 조치를 취해

표 2. 선박내의 일상생활에서 생기는 분뇨 등 폐기물의 처리방법 및 지정해역

폐기물 지정해역	처리방법	처 리	방 법
	제 1 해 역	제 2 해 역	
1. 폐지 • 폐목재류 등 가연성 일반폐기물	가. 작열감량 15 %이하의 상태로 하여 배출할 것 나. 비중 1.2 이상의 상태로 하여 배출할 것 다. 분말상태로 배출하지 말 것 라. 선박의 항행중(대수 속도 3 노트 이상의 속도로서 항행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배출할 것	가. 작열감량 15 % 이하의 상태로 하여 배출할 것 나. 비중 1.2 이상의 상태로 하여 배출할 것 다. 선박의 항행 중에 배출할 것	가. 작열감량 15 % 이하의 상태로 하여 배출할 것 나. 비중 1.2 이상의 상태로 하여 배출할 것 다. 선박의 항행 중에 배출할 것
2. 유리편류, 건축폐재류 등 비가연성 일반폐기물	가. 부유하지 아니하도록 하여 배출할 것 나. 선박의 항행 중에 배출할 것	가. 부유하지 아니하도록 하여 배출할 것 나. 선박의 항행 중에 배출할 것	가. 부유하지 아니하도록 하여 배출할 것 나. 선박의 항행 중에 배출할 것
3. 음식물 찌꺼기	가. 마쇄하여 배출할 것 나. 선박의 항행 중에 배출할 것	가. 선박의 항행 중에 배출할 것	선박의 항행 중에 배출할 것
4. 분뇨	가. 분은 해운항만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마쇄장치 또는 분뇨처리장치로 처리하여 배출할 것 나. 수중에 깊이 배출할 것 다. 선박의 항행 중에 배출할 것		

주 : 1. 제 1 해역은 다음의 해역으로 한다.

- 가. 항만법에 의한 항만의 경계선으로부터 밖으로 1 만미터까지의 해역
 - 나.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수산자원보전지구의 경계선으로부터 밖으로 1 만미터까지의 해역
 - 다. 선박안전법시행령 제 2조 제 9호의 규정에 의한 평수구역과 그 경계선으로부터 1 만미터까지의 해역
 - 라. 법 제 44 조의 3 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연안오염 특별관리해역의 경계선으로부터 밖으로 1 만미터까지의 해역
 - 마. 위의 가, 나, 다, 라 외의 해역에 있어서는 대한민국이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대축적 해도에 표시된 저조선으로부터 1 만미터 이내의 해역
2. 제 2 해역은 제 1 해역과 항만구역, 수산자원보전지구, 평수구역, 연안오염특별관리해역을 제외한 해역으로 한다.

야 한다.

4) 해역의 범위

법 제 3조제 1호의 규정에 의한 해역은 영해법의 규정에 의한 영해 및 내수로 한다.

— 영해(領海) : 영해법 제 1조(영해의 범위)에 “대한민국의 영해는 기선(基線)으로부터 측정하여 그 외측(外側) 12 해리의 선까지 이르는 수역으로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수역에 있어서는 12 해리 이내에서 영해의 범위를 따로 정할 수 있다”로 되어 있다.

— 내수(內水) : 영해법 제 3조에 의하면 내수는 “영해의 폭을 측정하기 위한 기선으로부터 육지측(陸地側)에 있는 수역은 내수로 한다”로 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내수와 착오가 없도록 해야 한다.

5) 선박 내의 일상생활에서 생기는 폐기물의 처리방법 및 지정해역

법 제 10조제 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뇨 등 폐기물을 배출하는 경우 그 처리방법과 지정해역은 표 2와 같으며, 통상 탑승인원 20인 이하의 선박에 있어서는 이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6) 비용부담의 범위

법 제 30조 1항에 의하면, 방제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조치만으로 해양의 오염을 방지하지 못하였을 때는 내무부장관은 관계기관의 협조를 얻어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방제에 소요된 비용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박의 소유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다만 천재, 지변, 전쟁, 사변 및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발생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해양오염방지법시행령(대통령령) 제 31조에 의하면 비용부담의 범위는 :

— 방제조치로 인하여 멸실된 기구와 소비된 소모품의 가격에 상당하는 금액

— 방제조치를 위하여 사용된 기구의 수리비, 다만 수리하여도 그 용도에 사용할 수 없게 된 것의 경우에는 그 기구의 신규의 가액에서 현금의 가액을 공제한 금액

— 방제조치에 사용된 기구의 임차료와 세척에 소요된 비용

— 방제조치에 소요된 선박의 운항비, 인건비 및 기타 비용

— 방제조치를 위한 선박

의 예인, 기구 및 소모품 등의 운반, 배출 및 회수된 기름, 폐기물, 기타 물건의 제거, 운반 또는 처리에 소요된 비용

— 내무부장관은 상기 소요비용을 선박의 소유자에게 부담시키고자 할 때에는 그 비용의 산출기초를 명시하여야 한다.

7) 분쟁의 조정

해역의 오염으로 인하여 분쟁이 발생한 때에는 당사자는 내무부장관에게 분쟁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법 제 30조)

8) 선박을 버릴 수 있는 해역

법 제 38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선박을 버릴 수 있는 해역은 수심이 1,500 미터 이상인 해역으로 하나, 수산청장이 수산자원보호를 목적으로 해양환경보호 및 선박항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선박을 인공어초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버리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제까지는 국제해양오염방지규칙 및 우리나라의 해양오염방지법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차기호에는 해양오염방지기자재증 유수분리기에 대하여 기술하고자 한다.

간첩신고 빠짐없이 국가안보 빈틈없이